

결 산 검 사 의 건 서

-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예산군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

-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수신 : 예산군수

2023회계연도 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4년 4월 24일 ~ 5월 13일(20일간)
- 검사장소 : 예산군청 3층 감사실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심 완 예 (예산군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윤 기 성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박 찬 영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신 원 석 (회계사)

결산검사의견서

예산군수 귀하

2024년 5월 13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예산군 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24일부터 2024년 5월 1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의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예산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예산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예산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 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예산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심 완 예



검사위원 윤 기 성



검사위원 박 찬 영



검사위원 신 원 석



목 차

I. 결산검사경과	3
II. 결산검사 총괄현황	4
1. 예산군 재정의 개황	4
2. 세입·세출 결산	6
(1) 총괄	6
(2) 일반회계	8
(3) 특별회계	14
(4)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16
3. 기금의 결산	17
4. 재무제표의 결산	19
5. 성과보고서의 결산	21
6. 결산서부속서류의 결산	23
(1) 채권	23
(2) 채무	24
(3) 공유재산	25
(4) 물품	25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26
IV. 전년도검사결과 조치내용	43
V. 검사조서	44

I .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4. 4. 24. ~ 5. 13.(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심 완 예	결산검사 총괄	
위 원	윤 기 성	세입 결산검사	
위 원	박 찬 영	세입 결산검사	
위 원	신 원 석	세출 결산검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자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현 황 조 사	4. 24.	업무분장 및 현황조사	
결산검사계획	4. 25.	분야별 검사계획 확정	
통합재정검사	4. 26.	세입·세출 및 기금의 변동내역	
통합재정검사	4. 2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장조사	
세입세출검사	4. 30.	재무제표상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등	
세입세출검사	5. 1.	세입세출기본회계 및 세출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검토	
세입세출검사	5. 2.	예산부당편성 및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	
세입세출검사	5. 3.	사업예산의 기본구조의 구조화	
세입세출검사	5. 7.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항검토	
세입세출검사	5. 8.	예산 이월(명시·사고·계속비)내역 검토	
세입세출검사	5. 9.	공유재산, 보조금, 물품, 채무 등	
세입세출검사	5. 10.	계약관련,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 등	
의 견 서 작 성	5. 13.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 등 의견서작성	

II.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예산군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 세입·세출(기금포함)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세 입(수입)	913,628	979,412	1,050,453	1,163,965	1,194,867
	세 출(지출)	699,174	764,447	835,434	864,333	901,484
	결산상잉여금	214,454	214,965	215,019	299,632	293,383
일반회계	세 입	825,317	902,569	944,833	1,032,142	1,042,963
	세 출	659,881	725,888	772,405	829,893	831,495
	결산상잉여금	165,436	176,681	172,428	202,249	211,468
특별회계	세 입	43,753	29,855	47,590	49,489	66,460
	세 출	37,023	21,443	33,060	32,781	38,697
	결산상잉여금	6,730	8,412	14,530	16,708	27,763
기 금	세 입	44,558	46,988	58,031	82,334	85,444
	세 출	2,270	17,116	29,969	1,659	31,292
	결산상잉여금	42,288	29,872	28,061	80,675	54,152

- 2023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은 세수 증가로 세입이 증가에 기인하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연도(기금제외)에 10,707,022원이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인구 81,273명 기준)
- 예산군의 현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이나 전년도 이월금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예산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채 무 계	-	-	-	-	-	
공 채	-	-	-	-	-	
차 입 금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지방공기업채무	-	-	-	-	-	
총 합 계	-	-	-	-	-	

○ 2023년 예산군 채무는 0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단위: 백만원)

관 점	재 정 지 표	산 정 방 식	주의	심각
채무관리	예산대비채무비율	$\frac{0 \text{ (지방채무잔액)}}{1,100,490 \text{ (총예산)}} = 0\%$	25%초과	40%초과
	채무상환비율	$\frac{0 \text{ (지방채무 상환액)}}{489,330 \text{ (일반재원1)}}$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지방세징수액현황	$\frac{6,058 \text{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5,860 \text{ (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 103.38\%$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금고잔액현황	$\frac{281,489 \text{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260,986 \text{ (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 107.85\%$	20%미만	10%미만
공기업	공기업 부채비율	1 (부채)	400%초과	600%초과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320,578 (순 자산)		

○ 예산군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정위험 판단 지표는 양호하다 할 것임.

1) 일반재원: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기금제외)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C = A-B)
합 계	1,100,490	1,109,423	870,192	239,231
일반회계	1,045,878	1,042,963	831,495	211,468
특별회계	54,613	66,460	38,697	27,763
공기업특별회계	29,024	39,756	22,395	17,361
기타특별회계	25,589	26,703	16,302	10,401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결산상 잉여금 (C)	명 시 이 월 (D)	사 고 이 월 (E)	계 속 비 이 월 (F)	보조금 실제반납금 ²⁾ (G)	순세계 잉여금 (H = C-D-E-F-G)
합 계	-	239,231	70,488	26,860	98,783	9,624	33,476
일반회계	-	211,468	68,728	25,662	89,457	8,800	18,821
특별회계	-	27,763	1,760	1,198	9,326	823	14,655
공기업특별회계	-	17,361	319	1,068	3,647	-	12,327
기타특별회계	-	10,401	1,441	130	5,679	823	2,329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보조금실제반납금: 보조금 결산의 집행잔액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1,094억 2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1,004억 90백만원 대비 89억 33백만원 많게 수납되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9%인 8,701억 92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92억 31백만원이고
- 이중 명시이월 704억 88백만원, 사고이월 268억 60백만원 및 계속비이월 987억 83백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6억 2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4억 76백만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334억 76백만원임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1,045,878	1,052,282	1,042,963	637	8,682
결산확인액	1,045,878	1,052,282	1,042,963	637	8,682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458억 7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522억 82백만원 중 수납액은 1조 429억 63백만원(99.72%)이며, 미수납액은 86억 82백만원(0.83%)로 주된 사유는 납세태만 31억 82백만원, 자금압박 18억 25백만원 등임.
- 불납결손액은 6억 37백만원(0.06%)로서 주된 사유는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4억 2백만원, 평가액부족 1억 78백만원 등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실제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42,963	1,042,963	-

○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23	1,045,878	1,052,282	1,042,963	637	8,682	100.61%	99.11%	0.06%
2022	1,041,066	1,040,217	1,032,142	1,256	6,819	99.92%	99.22%	0.12%
증감	4,812	12,065	10,821	△619	1,863	0.69%	△0.11%	△0.06%

-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48억 12백만원(0.46%), 징수결정액은 120억 65백만원(1.16%), 수납액은 108억 21백만원(1.05%)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6억 19백만원(49.28%)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18억 63백만원(27.32%) 증가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11%으로 전년대비 △0.1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86억 82백만원(0.82%)로서 전년도 68억 19백만원(0.66%)에 비해 0.16% 증가함.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 수납액
합 계	1,045,878	1,052,282	1,042,963	637	8,682
지방세수입	67,900	77,834	72,702	492	4,640
지방세	67,900	77,834	72,702	492	4,640
보통세	67,250	74,722	72,200	344	2,178
주민세	3,110	3,473	3,429	1	43
재산세	13,500	14,734	14,110	11	613
자동차세	10,800	12,903	12,346	2	555
담배소비세	6,240	7,168	6,877	199	92
지방소비세	15,800	15,656	15,656		
지방소득세	17,800	20,788	19,782	131	875
지난년도수입	650	3,112	502	148	2,462
세외수입	24,197	33,283	29,108	145	4,031
경상적세외수입	14,303	15,863	15,804	0	59
재산임대수입	630	776	752	0	24
사용료수입	3,443	3,892	3,859	0	33
수수료수입	2,778	3,037	3,036	0	1
사업수입	611	512	512	0	0
징수교부금수입	1,796	1,853	1,853	0	0
이자수입	5,045	5,793	5,792	0	1
임시적세외수입	8,994	15,692	12,102	134	3,456
재산매각수입	154	398	398	0	0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1,500	1,948	1,929	0	19
기타수입	6,690	10,214	9,073	0	1,141
지난연도수입	650	3,132	702	134	2,29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00	1,728	1,202	11	516
과징금	220	462	324	0	138
이행강제금	200	220	217	0	3
변상금	30	27	26	0	1
과태료	300	765	410	11	344
환수금	25	28	27	0	1
부담금	120	220	192	0	28
벌칙금	5	6	5	0	1
지방교부세	344,794	330,913	330,913	0	0
조정교부금등	29,647	33,685	33,685	0	0
보조금	344,312	340,861	340,861	0	0
국고보조금등	247,795	244,390	244,390	0	0
시·도비보조금등	95,517	96,471	96,471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5,028	235,705	235,695	0	10
보전수입등	205,890	206,568	206,558	0	10
내부거래	29,138	29,137	29,137	0	0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6.97%인 727억 2백만원, 세외수입은 2.79%인 291억 8백만원이 수납되었고,
- 그 외 지방교부세는 31.73%인 3,309억 13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3.23%인 336억 85백만원, 보조금은 32.68%인 3,408억 61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60%인 2,356억 95백만원이 수납됨.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³⁾	집행잔액
결 산 액	885,678	1,045,878	831,495	183,847	9,030	21,506
결 산 확 인 액	885,678	1,045,878	831,495	183,847	9,030	21,506
차 액	-	-	-	-	-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8,856억 78백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등 증감으로 인해 예산현액은 1조 458억 78백만원이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12%인 13억 2백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 등 13건임
- 세출예산 변경액은 예산현액의 0.18%인 18억 89백만원으로 문화관광과 추사서예창의마을 선급금 집행 등 33건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50%에 해당하는 8,314억 95백만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838억 47백만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687억 28백만원, 사고이월액은 256억 62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894억 57백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함.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6%에 해당하는 215억 6백만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대부분 예산집행 후 지출 잔액임.

3)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원인별현황에 작성한 보조금 반납금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831,495	831,495	-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2 지출액	2023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829,893	1,045,878	831,495	79.50%	1,602	100.19%
일 반 공 공 행 정	95,733	67,029	50,197	74.89%	△45,536	52.43%
공 공 질 서 및 안 전	50,035	60,688	40,326	66.45%	△9,709	80.60%
교 육	3,625	4,020	3,935	97.91%	310	108.56%
문 화 및 관 광	51,488	109,294	73,727	67.46%	22,239	143.19%
환 경	89,390	129,880	102,448	78.88%	13,058	114.61%
사 회 복 지	167,187	180,833	174,321	96.40%	7,134	104.27%
보 건	12,993	18,090	13,204	72.99%	211	101.63%
농 립 해 양 수 산	157,211	227,590	176,550	77.57%	19,339	112.3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775	28,932	20,166	69.70%	△5,609	78.24%
교 통 및 물 류	38,823	52,182	41,660	79.84%	2,837	107.3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6,741	76,542	48,933	63.93%	△7,808	86.24%
예 비 비	-	1,900	-	-	-	-
기 타	80,892	88,898	86,027	96.77%	5,135	106.35%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 1,765억 50백만원, 사회복지 1,743억 21백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부문은 문화및관광 737억 2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19%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 수납액
합 계	54,613	66,740	66,460	0	280
기 타 특 별 회 계	25,589	26,781	26,703	0	78
의 료 급 여 기 금	914	966	931	0	3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 활 안 정 기 금	2	15	15	0	0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1,519	1,466	1,465	0	1
주 차 장 사 업	9,891	9,884	9,853	0	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 지 보 상	550	550	550	0	0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645	1,365	1,357	0	8
폐 기 물 처 리 시 설	1,450	1,472	1,472	0	0
학 교 급 식 지 원 센 터	9,114	9,555	9,555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504	1,508	1,505	0	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9,024	39,959	39,756	0	202
상 수 도 사 업	11,223	19,932	19,754	0	177
하 수 도 사 업	17,800	20,026	20,002	0	25
결산확인액					
차액			0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46억 1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67억 40백만원 중 수납액은 664억 60백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21.69%로 118억 47백만원 많게 수납되었다.
- 수납액 664억 60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99.58%이며, 미수납액 280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42%임.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 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6,460	66,460	-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54,613	38,697	12,284	823	2,808
기 타 특 별 회 계	25,589	16,302	7,250	823	1,214
의 료 급 여 기 금	914	911	-	-	3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수 급 자 생 활 안 정 기 금	2	2	-	-	-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1,519	1,340	-	-	179
주 차 장 사 업	9,891	3,814	5,816	102	159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대 지 보 상	550	485	-	-	65
산 업 단 지 조 성 관 리 사 업	645	510	-	-	135
폐 기 물 처 리 시 설	1,450	16	1,434	-	-
공 공 급 식 지 원 센 터	9,113	8,416	-	25	673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1,504	807	-	696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9,024	22,395	5,034	-	1,594
상 수 도 사 업	11,223	9,903	340	-	980
하 수 도 사 업	17,800	12,492	4,695	-	614
결산확인액		38,697			
차액		-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예산현액은 546억 13백만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86%에 해당하는 386억 97백만원이었으며,
- 이월액 중 명시이월 17억 60백만원이 발생하고, 사고이월 11억 98백만원, 계속비이월 93억 26백만원이 발생한바 이는 공사 지연 등에 기인하였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8,697	38,697	-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단위: 백만원)

구분	건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 잔액	
					합계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26	421,765	271,711	219,302	196,131	70,488	26,860	98,783	6,333	
일반회계	316	398,239	260,234	208,824	183,847	68,728	25,662	89,457	5,569	
기타특별회계	7	10,804	3,599	3,349	7,250	1,441	130	5,679	205	
	주차장 특별회계	5	9,354	3,583	3,333	5,816	1,441	130	4,245	205
	폐기물 처리시설	2	1,450	16	16	1,434	-	-	1,434	-
공기업특별회계	3	12,722	7,878	7,129	5,034	319	1,068	3,647	559	
	상수도 특별회계	1	5,326	4,881	4,677	340	319	21	-	309
	하수도 특별회계	2	7,396	2,997	2,452	4,695	-	1,048	3,647	250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기금의 결산

본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 ㉓=㉔-㉕	조성액 ㉔	사용액 ㉕	
계	80,676	△26,524	4,768	31,292	54,15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9,409	△27,598	1,402	29,000	31,8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423	△115	605	720	13,308
포괄기금	5,301	175	1,241	1,066	5,477
재난관리기금	1,675	486	804	319	2,160
주민지원기금	531	△35	10	45	497
옥외광고발전기금	138	202	344	142	340
예산군고향사랑기금	-	325	325	-	325
식품진흥기금	199	36	36	-	235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조성·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평균 증가율 ⁴⁾
전년도말 조성액	21,302	42,288	29,872	28,061	80,676	39.5
당해연도 조성액	23,256	4,699	28,159	54,273	4,768	△32.7
당해연도 사용액	2,270	17,116	29,969	1,658	31,292	92.7
당해연도말 조성액	42,288	29,872	28,061	80,676	54,152	6.4

4) 연평균 증가율(e호주 자동산출) : 전년대비 증가율을 계산하여, 5년 평균 증가율로 환산

- 2023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806억 76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7억 68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312억 92백만원을 공제한 541억 52백만원이다.
- 검사결과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1억 52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265억 24백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4. 재무제표의 결산

2023회계연도 예산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전 년 대 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3,752,494	3,932,355	179,861	104.8
Ⅰ. 유 동 자 산	310,550	302,818	△7,732	97.5
Ⅱ. 투 자 자 산	6,986	7,000	14	100.2
Ⅲ. 일반유형자산	213,509	216,745	3,236	101.5
Ⅳ. 주민편의시설	610,220	676,718	66,498	110.9
Ⅴ. 사회기반시설	2,608,790	2,725,935	117,145	104.5
Ⅵ. 기타비유동자산	2,439	3,139	700	128.7
부 채	47,634	44,655	△2,979	93.7
Ⅰ. 유 동 부 채	15,049	11,685	△3,364	77.6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기타비유동부채	32,585	32,970	385	101.2
순 자 산	3,704,859	3,887,700	182,841	104.9
Ⅰ. 고정순자산	3,409,056	3,596,924	187,868	105.5
Ⅱ. 특정순자산	81,381	54,757	△26,624	67.3
Ⅲ. 일반순자산	214,422	236,019	21,597	110.1

- 2023회계연도 말 예산군의 자산은 3조 9,323억원으로, 전년도 3조 7,524억원보다 1,799억원(4.79%)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 반면, 2023회계연도 말 예산군의 부채는 446억원으로 전년도 476억원보다 29억원(6.25%)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가 33억 원 감소한 데 기인한 것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전 년 대 비 증 감	
			금 액	증감률
I. 사업순원가 (가-나)	180,820	189,411	8,591	104.8
가. 사업총원가	509,897	501,798	△8,099	98.4
나. 사업수익	329,077	312,388	△16,689	94.9
II. 관리운영비	88,421	97,480	9,059	110.2
III. 비배분비용	47,789	52,598	4,809	110.1
IV. 비배분수익	18,466	28,376	9,910	153.7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98,564	311,112	12,548	104.2
VI. 일반수익	523,810	499,427	△24,383	95.3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225,246)	(188,315)	36,931	83.6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예산군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5,017억 98백만원에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123억 88백만원을 차감한 1,894억 11백만원이다.
- 또한 2023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 974억 80백만원은 인건비 863억 90백만원과 경비 110억 89백만원, 민간등이전비용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비배분비용은 상각비 464억 8백만원과 기타비용 61억 89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105억 60백만원과 기타수익 178억 16백만원으로 구성되고, 일반수익은 자체조달수익 801억 76백만원과 정부간 이전수익 3,738억 50백만원과 기타수익 454억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3회계연도 예산군의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1,883억 1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69억 31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주로 정부간이전수익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5. 성과보고서의 결산

- 예산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3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예산군은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3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예산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230개의 사업 중 달성 161개(70%)로 전년 달성률(52.85%)에 비해 높아졌다.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한 지표들이 있어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

부서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미달성	달성률(% (B/A))
계	22	90	230	189	41	82.2
기 획 실	1	2	6	5	1	83.3
총 무 과	1	5	12	10	2	83.3
주 민 복 지 과	1	5	10	9	1	90.0
가 족 지 원 과	1	4	15	15	0	100
민 원 봉 사 과	1	6	16	16	0	100
문 화 관 광 과	1	4	13	6	7	46.2
재 무 과	1	2	3	2	1	66.7
교 육 체 육 과	1	4	11	10	1	90.9
경 제 과	1	7	17	14	3	82.4
환 경 과	1	7	13	10	3	76.9
농 정 유 통 과	1	7	13	10	3	76.9
축 산 과	1	2	5	5	0	100
산 립 녹 지 과	1	2	4	3	1	75.0
건 설 교 통 과	1	7	12	7	5	58.3
도 시 건 축 과	1	7	16	13	3	81.3
안 전 관 리 과	1	4	10	9	1	90.0
수 도 과	1	3	6	4	2	66.7
의 회 사 무 과	1	1	3	3	0	100
보 건 소	1	4	18	16	2	88.9
농 업 기 술 센 터	1	3	16	13	3	81.3
공 공 시 설 사 업 소	1	1	6	6	0	100
관 광 시 설 사 업 소	1	3	5	3	2	60.0

6. 결산서 부속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610	496	934	6,172
일	반 회 계	3,966	22	436	3,553
기	타 특 별 회 계	556	9	90	475
	농공지구조성사업	330	9	88	2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226	-	1	225
기	금	2,088	465	409	2,144
	포 괄 기 금	2,088	465	409	2,144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72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 무

채 무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	-	-	-
일 반 회 계	-	-	-	-
기 타 특 별 회 계	-	-	-	-
의 료 급 여 기 금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	-	-	-
농공지구조성사업	-	-	-	-
주 차 장 사 업	-	-	-	-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	-	-	-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공공급식지원센터	-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	-	-
기 금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	-	-	-
포 괄 기 금	-	-	-	-
재 난 관 리 기 금	-	-	-	-
주 민 지 원 기 금	-	-	-	-
옥외광고발전기금	-	-	-	-
예산군고향사랑기금	-	-	-	-
식 품 진 흥 기 금	-	-	-	-

○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다.

(3) 공유재산

본 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941,453	102,273	91,414	1,952,312	
행정 재산	소 계	1,539,568	102,255	19,994	1,621,829
	공 용 재 산	376,924	55,040	4,038	427,926
	공 공 용 재 산	993,925	46,596	15,956	1,024,564
	기 업 용 재 산	146,022	-	-	146,022
	보 존 용 재 산	22,698	619	-	23,317
일반재산	36,147	18	1,820	34,345	
건설중인재산	365,737	-	69,599	296,138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08억 59백만원이 증가한 1조 9,523억 12백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토지 319필지 584억 55백만원, 건물 17건 129억 27백만원 등이며, 감소내역은 임야 35건 △16억 35백만원 등이다.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 량	1,303	199	39	1,463
금 액	12,546	1,759	1,167	13,138

○ 검사결과, 물품은 미니버스 외 16종의 물품을 취득하였으며, 미니버스 외 3종의 물품을 처분하여 전년대비 592백만원이 증가하였다.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

사유별 미수납액 현황 (지방세+세외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자금압박	기타 등
2023년	합 계	8,671	663	77	3,181	1,825	2,925
일반회계 (A)	지방세수입	4,640	245	58	1,034	1,805	1,498
	세 외 수 입	4,031	418	19	2,147	20	1,427
2022년	합 계	6,819	486	37	2,799	1,387	2,110
일반회계 (A)	지방세수입	3,498	69	31	946	1,337	1,115
	세 외 수 입	3,321	417	6	1,853	50	995
증 감 (A - B)	합 계	1,852	177	40	382	438	815
	지방세수입	1,142	176	27	88	468	383
	세 외 수 입	710	1	13	294	△30	432

문 제 점

- 전년 대비 지방세 미수납액은 11억 42백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10백만원 증가함.
- 세외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부과액이 28억 5백만원 증가하였고, 납기 미도래 금액은 전년 대비 585백만원 증가함.
- 지방세의 경우 전년 대비 부과액이 521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당해연도 체납액이 11억 42백만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체납액이 크게 상승함.
-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결과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등 납세의무자의 납세 능력 상실과 납세 태만 등 사유로 나타남.
- 이 중 납세 태만은 납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 납부를 회피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는바 부서의 징수 노력이 요구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생계형 미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 태만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능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을 하기 바람.
- 자금압박은 납세의무자별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세입예산 추계 철저

세입 추계 및 결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B)	초과세입액 (C=B-A)	비고
2021년도	987,448	992,423	4,975	
2022년도	1,090,642	1,081,631	△9,011	
2023년도	1,100,490	1,109,423	8,933	

문 제 점

-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및 결산액 현황을 보면 초과세입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세입예산추계의 오차율 최소화 방안이 요구됨
- 특히 지난 2022회계연도 초과세입액 △90억 11백만원 발생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등⁵⁾)세입이 예산액 대비 184억 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2023회계연도에는 물가상승 및 경기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가 지방세입 감소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금리인상 정책 등 세입 증가 요인으로 예산 대비 89억 33백만원이 초과 발생하여 더 세밀한 세입추계 목표 설정이 요구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초과 세입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부동산교부세 감소 : 세입 원천인 종합부동산세의 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감소

3.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액 사유별 관리 철저

□ 2023회계연도 환급액 현황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 71억 33백만원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59억 23백만원으로 전체 83.0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금 환급 사유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환급금	사 유 별							
		행정기관	국세경정	납세자권리구제	법인정산	차량미등기	법령개정	납세착오	기타*
합 계	7,192	5,923	408	97	90	98	1	60	456
일반회계	7,133	5,923	408	97	90	98	1	60	456
특별회계	59								

< 행정기관착오 세입금 환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환급금	환급 세부내역	비고
계	5,923		
세외수입	2,371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분 : 2,361 기타 : 10	
보조금	3,552	시·도비 보조금 등 : 3,421 국고보조금 : 131	

□ 문 제 점

- 행정기관 착오 사유의 환급액 59억 23백만원 중 세외수입 23억 61백만원과 보조금 35억 52백만원의 환급 사유는 기타⁶⁾로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 세입금 환급 행정행위 사유가 과목정정 및 미사용 보조금 반납 등 사실상 행정기관 착오와는 무관한 환급액이 대부분 행정기관의 착오로 입력되고 관리되지 못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징수행정 비능률성 및 신뢰성을 저해함.

6) 기타 : 과목 착오 오류정정 및 보조금 반납 등 사유로 환급된 금액

□ 개선 및 권고사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징수행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세입금 환급의 주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기관의 착오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요구됨.

4. 이월사업 예산 과다 발생

□ 회계별 이월 현황(예산현액 대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이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계	1,100,490	196,131 (17.82%)	70,488 (6.41%)	26,860 (2.44%)	98,783 (8.98%)
일 반 회 계	1,045,878	183,847 (17.58%)	68,728 (6.57%)	25,662 (2.45%)	89,457 (8.55%)
특 별 회 계	54,613	12,284 (22.49%)	1,760 (3.22%)	1,198 (2.19%)	9,326 (17.08%)
공기업특별회계	29,024	5,034 (17.34%)	319 (1.10%)	1,068 (3.68%)	3,647 (12.57%)
상 수 도	11,223	340 (3.03%)	319 (2.84%)	21 (0.19%)	-
하 수 도	17,800	4,695 (26.38%)	-	1,048 (5.89%)	3,647 (20.49%)
기 타 특 별 회 계	25,589	7,250 (28.33%)	1,441 (5.63%)	130 (0.51%)	5,679 (22.19%)
의 료 급 여	914	-	-	-	-
국민기초생활	2	-	-	-	-
농공지구조성	1,519	-	-	-	-
주 차 장 사 업	9,891	5,816 (58.80%)	1,441 (14.57%)	130 (1.31%)	4,245 (42.92%)
장 기 미 집 행	550	-	-	-	-
산 업 단 지 조 성	645	-	-	-	-
폐 기 물 처 리	1,450	1,434 (98.90%)			1,434 (98.90%)
공 공 급 식 지 원	9,113	-	-	-	-
발 전 소 주 변 지 역	1,504	-	-	-	-

* 총계금액 기준으로 합계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문 제 점

- 예산군 총 예산현액 1조 1,004억 90백만원 중 17.82%인 1,961억 31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704억 88백만원(6.41%), 사고이월 268억 60백만원(2.44%), 계속비 이월 987억 83백만원(8.98%)임.
- 사업예산 전액을 이월한 경우는 59건, 297억 48백만원으로서 전액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예산 편성 시 단위사업의 집행계획을 중점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예산성립 후에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야 할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가능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줄이고,
- 사업별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고 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공기 부족” 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가용재원을 엄정하게 포착·계상하여 본예산에 반영, 사업예산이 회계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5. 일반회계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리 소홀

□ 집행잔액 음수 현황

(단위: 원)

부 서	보조사업명	통계목명	재원구분	목별수령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가족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담 임 교 사 지 원 비)	기타보상금	시 군 구 비	75,971,000	82,275,000	-6,304,00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기타보상금	시 군 구 비	39,373,000	42,955,000	-3,582,000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 프 로 그 램 운 영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국 비	5,068,000	7,137,000	-2,069,000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 프 로 그 램 운 영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시 도 비	1,086,000	1,529,000	-443,000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 프 로 그 램 운 영	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시 군 구 비	1,086,000	1,529,000	-443,000
환 경 과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	사회보장적 수 혜 금	국 비	275,830,000	275,968,520	-138,520
농정유통과	산 지 유통 조 직 육 성 (전 환 사 업)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시 군 구 비	138,980,000	144,580,000	-5,600,000
	산 지 유통 조 직 육 성 (전 환 사 업)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시 도 비	72,420,000	74,820,000	-2,400,000
	여 성 농 업 인 센 터 운 영 지 원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시 군 구 비	102,881,000	105,772,000	-2,891,000
	여 성 농 업 인 센 터 운 영 지 원	민 간 경 상 사 업 보 조	시 도 비	39,191,000	40,347,000	-1,156,000
	예 산 군 농 촌 공 간 정 비 사 업	시 설 비	국 비	900,000,000	4,000,000,000	-3,100,000,000
건설교통과	농 어 촌 버 스 벽 지 노 선 지 원	운수업계 보 조 금	시 도 비	45,990,000	46,000,000	-10,000

○ 보조금의 경우, 실제 예산액과 목별 수령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 보조금 송금 현황과 재원별 예산을 확인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별 수령액보다 집행액이 더 큰 사업들이 발견됨.

문제점

-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도비 보조금 감액이 미반영 된 채로 지출이 되었거나, 보조금 반납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에 있어 소홀함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서의 집행잔액은 대외에 공표되는 자료로서, 사유별로 명확하게 구분 되어야 하며 향후 정책 판단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집행 시 담당자가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보조금시스템 사전 교육을 통해 시스템 처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특히, 보조금의 경우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결산상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부적절한 예산전용의 지양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예산의 전용건수 및 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전 용	5	487	12	3,640	13	1,302

- 2023회계연도 전용건수 및 금액

(단위: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총 13건			7,740	1,302	1,302		
기 획 실	군정종합운영비지원	사 무 관 리 비	57	17		2023-03-31	신 활 력 창 작 소 냉동보관창고설치
	군정종합운영비지원	시 설 비			17		
총 무 과	학생아르바이트운영	기 타 보 상 금	209	1		2023-06-29	정년퇴임자공적패 수여포상금부족
	공 무 원 포 상	기 타 보 상 금	1		1		
주 민 복 지 과	장 애 인 시 설 및 단 체 지 원	공 공 운 영 비	15	7		2023-01-23	예산군장애인종합 복 지 관 체 육 관 노후냉난방기교체
	장 애 인 시 설 및 단 체 지 원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7		
민 원 봉 사 과	민 원 행 정 관 리	사 무 관 리 비	62	15		2023-11-16	웨어러블 캠 구매
	민 원 행 정 관 리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15		
교 육 체 육 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행 사 운 영 비	370	60		2023-06-29	예 산 전 용
	교육경비 보조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475		60		
축 산 과	구제역예방백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62	14		2023-10-17	하반기 일제접종 관련 스트레스완 화제 구입비 증액
	스트레스완화제지원	재 료 비	100		14		

축 산 과	구제역예방백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48	129		2023-10-17	하반기 일제접종 관련 구제역백신 구입비 증액
	구제역예방백신지원	재 료 비	208		129		
축 산 과	구제역예방백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19	29		2023-10-17	하반기 일제접종 에 따른 시술비 증 액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기 타 보 상 금	287		29		
건설교통과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000	1,000		2023-04-20	충남도 추경에 맞 추어 사업비 공단 직 접 지 출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00		
건설교통과	도로유지관리	재 료 비	358	4		2023-04-25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 수집 기 구 입
	도로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		
안전관리과	대 설 대 책 비	자산및물품취득비	86	14		2023-12-22	제설장비 구입 불 가에 따른 전용
	대 설 대 책 비	재 료 비	10		14		
보 건 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행 사 운 영 비	125	15		2023-11-17	출산육아지원금 부족에 따라 예산 전 용 사 용
	저출산대책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 재 원)	882		15		
응 봉 면	청사및공공시설 유 지 보 수	재 료 비	3	0		2023-08-11	관급자재(아스콘) 단 가 상 승
	청사및공공시설 유 지 보 수	시 설 비	63		0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당초 편성된 예산과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임.
- 가급적 최소화가 요구되는데도 위 현황과 같이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여 사업비증감 조정사유가 발생하거나,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함.
-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및 소유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7. 예비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

□ 현 황

-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예비비예산 ㉞	지출결정액				예산대비 지출비율 ㉟/㉞
		계 ㉞=㉟+㉠+㉡	지출액 ㉟	이월액 ㉠	지출잔액 ㉡	
2023	3,685	1,785	1,248		537	33.9
2022	6,069	4,319	4,093		226	67.4
2021	4,212	3,436	3,249		187	77.1

-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

(단위: 백만원)

회계	통 계 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합계	3,685	1,785	1,248		537
			(100%)	(69.9%)		(30.1%)
일 반 회 계	일 반 예 비 비	10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85	1,785	1,248		537
	내 부 유 보 금	317,196	-	-	-	-
기 타 특 별 회 계	일 반 예 비 비	12	-	-	-	-

-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단위: 백만원, %)

추진부서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지출 결정액 ㉟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㉟-㉠-㉡	지출비율 ㉠/㉟
		합 계	1,785	1,248	-	537	69.9
농정유통과	벼병해충피해저감긴급방제지원	기 타 보 상 금	480	395	-	85	82.3
	농작물피해복구비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41	337	-	4	98.8

축 산 과	가축전염병예방 (예비비)	기간제근로자등 보 수	28	27	-	1	96.4
	가축전염병예방 (예비비)	사무관리비	269	126	-	143	46.8
	가축전염병예방 (예비비)	재료비	43	43	-	0	100
	가축전염병예방 (예비비)	시설비	3	3	-	0	100
안전관리과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및복 구활동보상금	445	140	-	304	31.5
농업기술센터	농작물병해충방제비	기타보상금	176	176	-	-	100

□ 문 제 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상된 사업비로서 사전에 소요예산을 충분히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집행해야 하나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비비 지출 결정 시에는 그 취지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개별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비비로 집행한 예산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각 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적정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8.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

현황

- 성과달성률 50% 미만 현황

<총 230개 지표 대비 6개 지표 2.6%>

연번	부서	성과지표	성과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률(%)
1	환경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추진실적(%)	100	13	13
2	안전관리과	호스릴 소화전 설치 대수(대)	3	0	0
3	문화관광과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	90	10	11
4		가야사지 발굴조사(27%)	80	27	27
5	보건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횟수(회)	12	0	0
6		보건기관 이용 환자율(%)	35	11	31

- 성과달성률 200% 초과 현황

<총 230개 지표 대비 5개 지표 2.2%>

연번	부서	성과지표	성과달성도		
			목표	실적	달성률(%)
1	가족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2.7	9.1	337
2	축산과	내수면 교란어종퇴치량(톤)	15	40	266
3	문화관광과	지역향토축제 관람객 수(명)	210,000	515,091	245
4	교육체육과	예산군 평생학습관 참여자수(명)	505	1,504	297
5	공공시설사업소	1100년 기념관 이용자 수(명)	12,600	39,165	310

문제점

-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성과달성도를 보면 총 230개의 사업 중 달성 161개(70%)로 전년 달성률(52.85%)에 비해 높아졌지만, 50% 미만 달성 지표가 6개, 200% 초과 달성 지표가 5개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황임.

-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매년 동일하게 기재되고 일부 부서는 ‘주요 추진 성과’ 를 입력하지 않는 등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 기획실 - 단위사업 ‘군정 종합기획 조정’ 공란
문화관광과 -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주요성과’ 공란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추진 및 입력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작성하여 성과보고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 성과목표 설정 시 전년도 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되도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9. 하수도공기업 재정안정화 대책 필요

현황

- 202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과도한 수준임.
- 이와 반면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2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별 공기업특별회계 당기순손실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직 영	상 수 도	△925	△1,288	△86	△1,374	1,468
	하 수 도	-	△9,722	△8,461	△9,463	△7,619

문제점

-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2023년도에 △76억 1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도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선 및 권고사항

- 하수도공기업은 매년 과도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하수도공기업 재정안정화 대책으로는 동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하수도 요금 조정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2022회계연도 개선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7건으로

- 지방세·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폐업 및 파업 등 무재산 고액 납세자의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액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23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줄어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출예산을 전년도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도 27백만원에서 증가한 88백만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하는 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불용 처리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며

- 이월사업비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하여 향후에는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성과보고서의 경우, 2023회계연도 성과달성도를 보면 총 230개의 사업 중 달성 161개(70%)로 전년 달성률(52.8%)에 비해 높아진 수치로 전년 대비 성과지표 운영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 추후 반복되는 권고사항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함.

V. 검 사 조 서

- 검사대상 : 예산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 검사기간 : 2024. 4. 24. ~ 5. 13. (20일간)

대표위원 : 심 완 예



일자별	결 산 검 사 내 용	요구자료
4. 24.	업무분장 및 현황조사	부서 분야별 검사자료
4. 25.	분야별 검사계획표 작성	
4. 26.	세입·세출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안) 검토	일계표 및 계좌내역
4. 29.	재정상태 등 검토	재무제표관련
4. 30.	계약관계 및 보조금 내역 검토	주요사업계획서
5. 1.	자료확인 및 정리	
5. 2.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예산서 등
5. 3.	주요사업의 타당성 검토	20억이상 사업서류
5. 7.	예산 편성 세부 내역 검토	
5. 8.	성과보고서 검토	
5. 9.	공유재산 및 물품	취득 처분내역서
5. 10.	사업부서 대면 확인 및 세부사항 검토	담당 부서 면담
5. 13.	결산검사 의견서 취합	

○ 검사대상 : 예산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 검사기간 : 2024. 4. 24. ~ 5. 13. (20일간)

검사위원 : 윤기성



일자별	결산검사내용	요구자료
4. 24.	업무분장 및 현황조사	부서 분야별 검사자료
4. 25.	분야별 검사계획표 작성	
4. 26.	세입·세출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안) 검토	
4. 29.	자료확인 및 정리	
4. 30.	보조금 지출내역 및 불용액 검토	보조금 지출 서류
5. 1.	지출 내역의 적정성 검토	예산서 등
5. 2.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적정성 검토	예산변경내역서
5. 3.	주요사업의 불용내역 검토	담당 부서 면담
5. 7.	기금 지출 내역 검토	잔액증명서 등
5. 8.	예산 이월의 적정성 검토	이월사업 집행 서류
5. 9.	예비비 검토	예비비 잔액 사유
5. 10.	사업부서 대면 확인 및 세부사항 검토	담당 부서 면담
5. 13.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 검사대상 : 예산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 검사기간 : 2024. 4. 24. ~ 5. 13. (20일간)

검사위원 : 박 찬 영



일자별	결 산 검 사 내 용	요구자료
4. 24.	업무분장 및 현황조사	부서 분야별 검사자료
4. 25.	분야별 검사계획표 작성	
4. 26.	세입·세출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안) 검토	
4. 29.	지방세 세입자료 검토	부과 및 감면내역
4. 30.	자료확인 및 정리	
5. 1.	세입 내역의 적정성 검토	보조금 수납 내역
5. 2.	세입금 미수납액 및 과오납 처리 검토	독촉장 발부내역 등
5. 3.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 검토	장기보관금 내역 등
5. 7.	세입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예산서 등
5. 8.	지방세 결손처분 검토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
5. 9.	세외수입 징수 검토	세외수입 징수 내역
5. 10.	사업부서 대면 확인 및 세부사항 검토	담당 부서 면담
5. 13.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 검사대상 : 예산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 검사기간 : 2024. 4. 24. ~ 5. 13. (20일간)

검사위원 : 신 원 석



일자별	결 산 검 사 내 용	요구자료
4. 24.	업무분장 및 현황조사	부서 분야별 검사자료
4. 25.	분야별 검사계획표 작성	
4. 26.	세입·세출 결산서(안) 및 첨부서류(안) 검토	
4. 29.	지방세 세입자료 검토	부과 및 감면내역
4. 30.	자료확인 및 정리	
5. 1.	세입 내역의 적정성 검토	보조금 수납 내역
5. 2.	세입금 미수납액 및 과오납 처리 검토	독촉장 발부내역 등
5. 3.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 검토	장기보관금 내역 등
5. 7.	세입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예산서 등
5. 8.	지방세 결손처분 검토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
5. 9.	세외수입 징수 검토	세외수입 징수 내역
5. 10.	사업부서 대면 확인 및 세부사항 검토	담당 부서 면담
5. 13.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